

【 운영규정의 개요 】

2026. 01. 01

기 관 명	노아어르신복지센터	장기요양 기관기호	21129000402
설 치 일 자	2025. 07. 01.	대표자 및 시설장	김 주 영
급 여 종 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전화 / FAX	02. 943. 7773 02. 943. 6663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31길 3. 1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 용 대 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의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계 약 목 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 약 기 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장과 대상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 약 해 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기관과 계약 당사자의 협의할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6%, 9%등 건강보험 공단이 정함에 따름. ③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금액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이해하고, 업무범위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⑤ 요양보호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제3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 사유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급여종류	분 류	수 가(원)	본인부담금		
			15%	9%	6%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2,540	1,520	1,010
	60분 이상	25,320	3,680	2,210	1,470
	90분 이상	34,120	4,960	2,980	1,980
	120분 이상	43,430	6,320	3,790	2,520
	150분 이상	50,640	7,370	4,420	2,940
	180분 이상	57,020	8,300	4,980	3,320
	210분 이상	63,530	9,250	5,550	3,700
	240분 이상	70,080	10,200	6,120	4,080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50,100	7,510	4,500	3,000
	차량이용 차량내	88,990	13,340	8,000	5,330
	차량이용 가정내	80,230	12,030	7,220	4,810